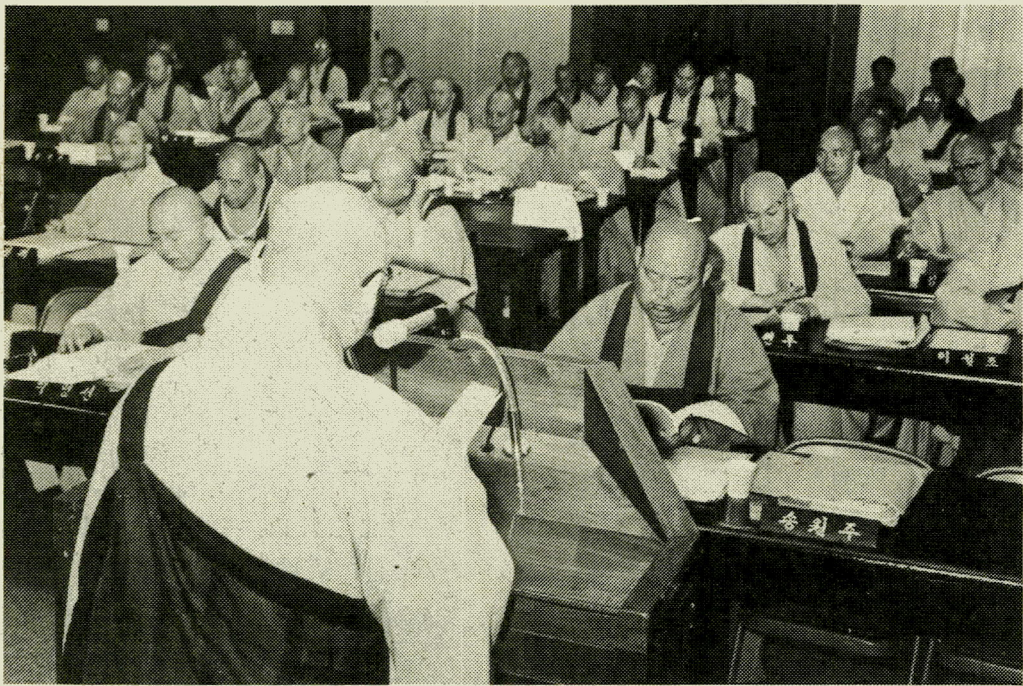




조계종은 지난 92년 8월 지금의 제10대 종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24개 본사별로 치렀다. 차기 총무원장은 이 종회에서 선출한다.

서의현 총무원장 “다시뽑자” “안된다”

불교계 ‘3선 논쟁’

8월 임기 끝나... 종헌 중임조항 놓고 해석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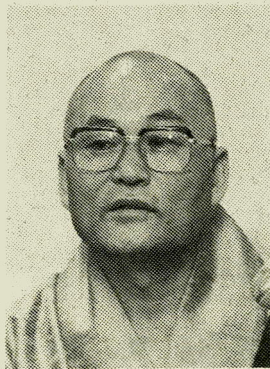
종회의원 대부분 ‘지지’... 일반 승려 반대 뜻 많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취급받던 ‘3선 논쟁’이 불교계에서 재연되고 있다. 조계종(종정 서암 스님)에서 벌어지는 이 3선 논쟁은 마치 제3공화국의 재판처럼 진행된다.

시비의 대상은 서의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은 지난 86년 4년 임기의 원장으로 선출된 뒤 90년 재선돼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총무원장은 각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는 권한을 누리는 자리다. 종헌(헌법격) 제44조 등에 따라 해인사·불국사 등 본사(24개)는 추천 없이, 본사 아래의 말사(1천7백여개)는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대개 본사에 자리잡은 문종이 내는 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이나, 문종 안에도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잦아 원장이 실질적으로 재가권을 행사하는 게 통례다.

3공 당시와 가장 흡사한 점이 3선 개헌을 둘러싼 시비다. 현재 종헌(43조)은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중임이 두번만을 뜻하는가, 몇번이라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인가가 시비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3공의 헌법도 ‘중임’을 못박았다. 사회법리상으로는 당시 박 대통령이 새벽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개헌을 강행했을 만큼 의문의 여지없이 ‘3임 불가’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서의현 총무원장은 최근 “3임을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자체가 불법행동”이라고 단정지음으로써 분명 ‘몇번이라도’



서의현 총무원장

쪽에 섰다. 한편 종헌종법상 종헌을 바꾸려면 종회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고 또 종정(서암 스님)이 의장으로 있는 원로회의로부터 인준받아야 하지만, 중임규정을 유권해석하는 것은 종회의원의 과반수면 가능하다.

뽑는 일은 종회(국회격)가 맡는다. 종회의원은 본·말사 주지들이 각 본사마다 2명씩 모두 48명을 뽑는다. 여기에 총무원장이 의장인 간선의원선출위원회가 27명을 고른다. 총무원장도 현재 조계사 교구에서 직선된 의원이다. 한 관제자는 이를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명하고, 주지들이 종회의원을 뽑고, 종회의원이 다시 총무원장을 뽑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국회의원도 다시 대통령을 뽑는 유신국회와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3공의 3선 개헌 당시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 즉 현 총무

원장 지지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직기간이 평균 1년이 못됐던 난립상을 8년간 진정시킨 점과 재임기간중의 여러 치적을 거둔하면서 대안부재를 주장하는 논리가 나돌고, 한편으로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만큼 실적은 올렸을 것”이라는 반박논리가 맞서는 것도 3선 개헌 당시의 ‘경제건설 완결’ 논쟁과 유사하다. 게다가 총무원장이 3선하겠다, 안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종도들의 뜻에 따라...”만을 말하는 행태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을 되뇌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심지어는 의원들로부터 각서를 받는다는 설이 근거 없이 떠도는 점도 3공 당시의 각서설을 연상하게 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16일 승려 4백명을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무원장의 3선을 86%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회(의장 종하 스님)는 지난 17일 임시종회를 오는 30일 연다고 공고하면서, 차기 총무원장 선출문제를 두번째 안건으로 전격 발표했다. 조계종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서의현 원장이 사실상 3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다. 아직 그에 맞설만한 경쟁자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사의 독특한 역경상 금기시된 3선 문제를 조계종이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인식기자